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. 11. 20 선고 2024가단7082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23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0.

주 문

-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
가. 피고와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2020. 4. 1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0. 10. 22. 접수 제162211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9. 8. 19. D 주식회사가 C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금(5,395,223원 및 그 중 1,143,753원에 대하여 2016. 2. 5.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%의 비율로 계산한 돈)채권을 양도받았고, 위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무렵 C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였다.

나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망 E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와 F이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, 망인이 2020. 4. 1. 사망함에 따라 처 F과 자녀 C, 피고가 이를 상속하게 되었다. 상속인들은 망인 명의의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하였고,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2020. 10. 22. 위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6221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C에게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대한 상속분(7분의 1)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, 4, 5호증의 각 기재, 고양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나.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,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

부족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C의 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C은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자신의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, 한편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로서도 위 분할협의 당시 그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.

다. 한편,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,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,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.

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,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·입증하여야 할 것이다.

라. 피고는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나,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,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마. 따라서, 이 사건 분할협의 중 C의 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한철

별지